

울산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14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6. 20.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56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양산시 D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10. 26. 접수 제61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로, “피고들”을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면 19행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를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10. 26. 접수 제61534호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5행의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7행, 8행의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이 사건 등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송인철, 판사 오수진